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85호 2021. 2. 22.(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429호)
-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430호)
-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31호)
-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32호)

훈 령

- 예천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예천군 훈령 제42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29호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 당국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있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 자문위원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예천군의회 의원

6.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

7.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

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호 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제1조 ~ 제2조)

나. 재정 지원(제3조)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4조 ~ 제8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신분 등 규정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30호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 사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행기관) 대행기관은 예천군으로 한다.

제4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5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하여 군 소속 공공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예천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의 사무 운영과 평화통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3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 사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나. 운영 및 사무 처리, 사무 지원 및 준용 규정(제4조 ~ 제5조)

- 군수의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 대행
- 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의
-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다.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근거 마련(제6조 ~ 제7조)

- 공무원의 파견 및 행정적 사무 지원
- 협의회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라. 포상 규정(제8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31호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를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적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규정 삭제(제11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32호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경비 지원 등) 군수는 박물관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2. 박물관 교육 관련 국내·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
3.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박물관 홍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코자 함

◇주요내용

- 박물관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규정 신설(제4조의2)
 -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시 필요한 경비,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예천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2월 2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28호

예천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예천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예천군 공무 국외출장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자”를 “공무국외출장자”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공무국외출장 허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일전”을 “30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외여행자”를 “해외출장자”로 한다.

제3조의1을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조의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국외여행”을 각각 “국외출장”으로 한다.

제4조 중 “공무국외여행계획”을 “공무국외출장계획”으로, “여행출발 40일 전까지 단체여행계획서”를 “출장 출발 40일 전까지 단체출장계획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허가”를 “공무국외출장허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여행기간 및 시기의 변경)”을 “(출장기간 및 시기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여행기간”을 “출장기간”으로, “여행계획”을 “출장계획”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외여행하는”을 “국외출장하는”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총무팀장”을 “후생복지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여행자”를 “출장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여행국가”를 “출장국가”로, “국외여행의 적절성”을 “국외출장의 적절성”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북도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9조제1호 본문 중 “단체공무국외여행”을 “단체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행경비”를 “출장경비”로, “공무국외여행자”를 “공무국외출장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2 및 제2호의3 중 “국외여행”을 각각 “국외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허가”를 “공무국외출장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여행인지”를 “출장인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여행목적”을 “출장목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를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여행인원”을 “출장인원”으로, “여행”을 “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여행기간”을 “출장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여행시기는 여행목적에 고려하여”를 “출장시기는 출장목적에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여행국”을 “출장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여행경비”를 “출장경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다목 중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전”을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으로, “해외여행”을 “해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충무과장은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을 “행정지원실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기간중”을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국외여행자”를 “공무국외출장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자가 여행을 마치고”를 “공무국외출장자가 출장을 마치고”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로, “(공무국외여행관리)”를 “(공무국외출장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외여행자”를 “국외출장자”로,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외여행”을 각각 “국외출장”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20 . . ~ 20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 장 경 비(천원)	
						금 액	부담기관
	계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항 운 공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해 외 출 장 자 수 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복명 시 귀국 보고서 등 제반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출장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출 장 계 획 서

출 장 목 적						
출 장 동 기 및 배 경						
출 장 기 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 장 경 비 부 담 기 관						
외 교 통 상 부 협 조 요 청	(외교통상부에 대한 재외공관 협조요청사항 기재)					
출 장 일 정	월 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명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별지 제4호서식】

공무 국외출장보고서 표준서식

I.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II.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 수령 관련
 - 수령 여부 : ☐ 여 / ☐ 부
 - 신고 여부 : ☐ 여 / ☐ 부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IV. 첨부자료

-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5호서식】

공무 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	허가일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국	방문기관	출장인원	출장경비(천원)	
							총 액	1인당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에 맞게 「예천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공무 국외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정 제명 및 내용 중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변경

- ‘여행’을 ‘출장’으로 변경하여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로 가는 것임을 명확히 함

나. 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화(제3조, 제7조 및 제9조)

- 국외출장 허가 신청 기한을 기존 출국예정일 2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
-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부담하는 경우 외부 심사위원 1명 추가 구성
- 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북도의 계획에 의한 공무 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판단 가능

다. 공무 국외여행 출장경비 환수 규정 신설(제17조)

-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음을 명시